[별표 2]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6조 관련)

1. 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절수설비: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나. 절수기기: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2. 법 제15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할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 신축건물(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설치할 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
  1) 수도꼭지

종 류	기 준
샤워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샤워·욕조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다만, 토수구 방향의 최대토수유량은 제외한다.
세면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5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세면·샤워용	다음 기준에 모두 맞는 것 가) 토수구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나) 샤워헤드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주방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0리터 이하인 것

  2) 변 기

종 류	기 준
로탱크형 대 변 기	가)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최대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인 것 나)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 (1) 최대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하며, 일체형 변기의 경우에는 2003년 9월 28일까지는 9리터 이하인 것을 설치할 수 있다. (2)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대변용으로 작동하였을 때의 최대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이며, 소변용으로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대변용 사용수량의 70% 이하인 것
세 척 밸 브 부	가)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

착 형 대 변 기	을 때 사용수량이 15리터 이하인 것 나)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맞는 것 (1)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한다. (2)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대변용 15리터 이하, 소변용 9리터 이하인 것
소변기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회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

비 고

1. 최대공급수압이 98kPa 미만인 지점에 설치되는 수도꼭지는 위 기준의 공급수압 조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최대공급수압이란 수도꼭지 직전의 위치에서의 수압을 말한다.
2. "토수량"이란 일정 시간 동안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물의 총량[ℓ]을 말한다.
3. "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ℓ/min]을 말한다. 다만, 토수가 시작된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토수유량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토수가 시작되어 토수가 그칠 때까지의 토수량을 토수유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4. "최대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의 핸들이나 레버를 완전히 열었을 때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ℓ/min]을 말한다. 다만,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경우 온수 쪽 또는 냉수 쪽 어느 한 쪽을 완전히 열었을 때의 토수유량을 최대 토수유량으로 본다.
5. "즉시지수" 방식이란 어떠한 기구·장치를 부착하거나 내장하여 이를 작동시킴으로써 물의 배출과 배출중지가 즉시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한다. 즉시지수 방식으로는 전자감응식, 풋밸브(foot valve) 부착 방식 등이 있으며, 스위치의 개폐에 의하여 물의 배출과 배출중지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제외한다.
6. "자폐식"이란 레버·핸들 등 조작부를 작동시키면 일정 시간 물이 배출된 후 자동으로 배출이 중지되는 방식을 말한다.
7. "정량지수" 방식이란 레버·핸들 등 조작부에서 미리 설정한 양의 물만 배출된 다음 자동으로 배출의 중지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하며, 주로 물받이용으로 이용한다.
8. "세척밸브"란 물탱크가 없는 양변기에 설치하는 수세밸브를 말한다.
9. "사용수량"이란 수도관으로부터 물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수세핸들을 작동시켜 변기를 세척할 때 드는 1회분 물의 양을 말한다. 다만, 변기 세척 후 물탱크

외의 부분을 다시 채우는 보충수는 제외한다.

10. "최대사용수량"이란 가장 많은 양의 물이 나올 수 있는 상태로 로탱크 절수부속을 설치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을 말한다.
11. 공중용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공도서관·판매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운수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에서 공중용으로 사용되는 화장실을 말한다.
12. "일체형 변기"란 물탱크와 변기가 일체로 되어 있는 변기를 말한다.

나. 신축하는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목욕장업 또는 골프장업에 설치할 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

1) 수도꼭지

가) 숙박업

종 류	기 준
샤워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샤워·욕조용	다음 기준에 모두 맞는 것 (1) 샤워헤드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이어야 하며, 샤워헤드 자체에 즉시지수 기능이 있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가 부착되어 있을 것 (2) 토수구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다만, 정량지수 수도꼭지나 욕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세면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세면·샤워용	다음 기준에 모두 맞는 것 (1) 토수구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2) 샤워헤드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나) 목욕장업

종 류	기 준
샤워용 (입식)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이며, 자폐식 밸브나 즉시지수 밸브가 부착된 것
샤워·욕조용 (좌식)	다음 기준에 모두 맞는 것 (1) 1개 레버식 또는 자동온도조절식 온냉수 혼합꼭지일 것 (2) 샤워헤드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이어야 하며, 샤워헤드 자체에 즉시지수 기능이 있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가 부착되어 있을 것

	(3) 토수구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일 것. 다만, 정량지수 수도꼭지는 제외한다.
세면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다) 골프장업

종 류	기 준
샤워용 (입식)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샤워·욕조용 (좌식)	다음 기준에 모두 맞는 것 (1) 샤워헤드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이어야 하며, 샤워헤드 자체에 즉시지수 기능이 있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밸브가 부착되어 있을 것 (2) 토수구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다만, 정량지수 수도꼭지는 제외한다.
세면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세면·샤워용	다음 기준에 모두 맞는 것 (1) 토수구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2) 샤워헤드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2) 변기

종 류	기 준
로탱크형 대 변 기	가)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최대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인 것 나)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맞는 것 (1) 최대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하며, 일체형 변기의 경우에는 2003년 9월 28일까지는 9리터 이하인 것을 설치할 수 있다. (2)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대변용으로 작동하였을 때의 최대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이며, 소변용으로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대변용 사용수량의 70% 이하인 것
세척밸브 부 착 형 대 변 기	가)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15리터 이하인 것 나)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맞는 것 (1)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한다. (2)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1초 동안 작

	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대변용 15리터 이하, 소변용 9리터 이하인 것
소변기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회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

비 고

1.~10. 가목의 비고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11. 숙박업의 경우 장애인·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총객실수의 5퍼센트(산정된 객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이내의 객실에는 샤워·욕조용 수도꼭지에 샤워헤드 방향으로 즉시지수 기능이 있는 샤워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목욕장업의 경우 장애인·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샤워·욕조용(좌식) 수도꼭지 중 2개 이내에는 샤워헤드 방향으로 즉시지수 기능이 있는 샤워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2001년 10월 4일 전 건축허가를 받은 숙박업·목욕장업 또는 골프장업에 설치할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의 기준

1) 숙박업

가) 수도꼭지

종 류	기 준
샤 워 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샤워·욕조용	다음 기준에 모두 맞는 것 (1) 샤워헤드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다만, 어느 경우에도 샤워헤드자체에 즉시지수 기능이 있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토수구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다만, 정량지수 수도꼭지나 욕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세면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7.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세면·샤워용	다음 기준에 모두 맞는 것

	(1) 토수구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7.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2) 샤워헤드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나) 대변기

종 류	기 준
로탱크형 대 변 기	(1) 최대사용수량이 11리터 이하의 구조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한다. (2)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소변용으로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대변용 사용수량의 70% 이하인 것
세척밸브 부 착 형 대 변 기	(1)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13리터 이하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한다. (2)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대변용 15리터 이하, 소변용 9리터 이하인 것

2) 목욕장업

가) 수도꼭지

종 류	기 준
샤워용 (입식)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다만, 어느 경우에도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샤워·욕조용 (좌식)	다음 기준에 모두 맞는 것 (1) 1개 레버식 또는 자동온도조절식 온·냉수 혼합꼭지일 것 (2) 샤워헤드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다만, 어느 경우에도 샤워헤드 자체에 즉시지수 기능이 있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 토수구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다만, 정량지수 수도꼭지는 제외한다.

세면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7.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나) 대변기

종 류	기 준
로탱크형 대 변 기	(1)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최대사용수량이 13리터 이하의 구조인 것 (2)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맞는 것 (가) 최대사용수량이 11리터 이하의 구조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한다. (나)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소변용으로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대변용 사용수량의 70% 이하인 것
세척밸브 부 착 형 대 변 기	(1)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15리터 이하인 것 (2)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 (가)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13리터 이하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한다. (나)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대변용 15리터 이하, 소변용 9리터 이하인 것

3) 골프장업

가) 수도꼭지

종 류	기 준
샤워용 (입식)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샤워·욕조용 (좌식)	다음 기준에 모두 맞는 것 (1) 샤워헤드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다만, 어느 경우에도 샤워헤드 자체에 즉시지수 기능이 있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토수구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

	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다만 정량지수 수도꼭지는 제외한다.
세면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7.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세면·샤워용	다음 기준에 모두 맞는 것 (1) 토수구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7.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2) 샤워헤드 방향: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나) 대변기

종 류	기 준
로탱크형 대 변 기	(1)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최대사용수량이 13리터 이하의 구조인 것 (2)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맞는 것 (가) 최대사용수량이 11리터 이하의 구조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한다. (나)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소변용으로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대변용 사용수량의 70% 이하인 것
세척밸브 부 착 형 대 변 기	(1)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15리터 이하인 것 (2)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맞는 것 (가) 수세핸들을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13리터 이하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한다. (나)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1초 동안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대변용 15리터 이하, 소변용 9리터 이하인 것

비 고

1.~10. 가목의 비고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11. 숙박업의 경우 장애인·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총객실수의 5퍼센트(산정된 객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이내의 객실에는 샤워·욕조용 수도꼭지에 샤워헤드 방향으로 즉시지수 기능이 있는 샤워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목욕장업의 경우 장애인·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샤워·욕조용(좌식) 수도꼭지 중 2개 이내에는 샤워헤드 방향으로 즉시지수 기능이 있는 샤워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수도꼭지 등이 벽 속에 설치되어 있어 즉시지수 기능이 있는 샤워헤드를 설치하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를 부착하기 위하여 벽면 해체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수도꼭지 등을 최초로 교체할 때 설치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14.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영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재 및 제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